

주식 양도소득세제 개정에 대한 소고¹⁾

오 덕 교 연구위원 (deokkyo@cgs.or.kr)

- ▶ 정부는 2015년 8월 과세개편안을 발표하였고, 정부의 과세개편안은 지난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지난 12월 24일 관련 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함
- ▶ 이번 개편안에서 주식 양도소득세제는 대주주 범위의 확대와 함께 상장 중소기업의 대주주에 대해서도 대기업과 동일한 세율(20%)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됨
- ▶ 이번 세제 개편으로 인하여 신규로 대주주로 분류되는 주주들은 기존에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20~30%의 주식 양도소득세를 적용받게 되어 가장 많은 세 부담을 받을 것으로 판단됨
- ▶ 향후 주식 양도소득세제를 전면 도입한다면 투자자들의 세 부담과 세제 개편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함

주식 거래시 투자자들은 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소득세의 대상이 되며, 매 거래시 거래대금의 3%를 증권거래세로 납부해야 하고,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 주식 양도소득세의 대상이 되는 투자자의 경우 주식을 매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주식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렇듯, 조세제도는 투자자들의 투자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조세제도의 변경은 투자자들의 매매행위 또는 투자행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개연성을 지니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5년 8월 주식 양도소득세제 개편안을 발표하였으며, 소득세법 개정안은 지난 12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또한 후속작업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여 지난 12월 24일 입법예고하였다.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주식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범위의 확대와 아울러 중소기업에 대한 세율 인하 혜택의 폐지이다. 본 고에서는 이번 주식양도소득세제 개편에 따른 영향을 논하고자 한다.

주식 양도소득세제의 주요 개정 사항

지난 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식양도소득세제는 먼저 대주주에 대한 주식 양도소득세율을 단일화 하였다(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기존에는 중소기업 대주주에 대하여 세율을 10%로 하고 중소기업 외

1) 본 고는 한국기업지배구조위원회에서 수행한 기획재정부의 「주주에 대한 과세체계 정비방안 연구」의 용역보고서에 기초하여 작성함

법인의 대주주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이를 단일화하여 대주주에게는 기업규모와 상관 없이 2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아래 <표 1> 참조).

<표 1>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단일화 방안

현 행	개 정 안
□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 ○ 중소기업: 10% ○ 중소기업 외 법인: 20% ○ 중소기업 외 법인의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 30%	□ 대주주 양도소득세율 단일화 ○ 중소기업 - (대주주) 20% - (그 외 주주) 10% ○ (좌 등)

출처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5 과세개편안", 2015.8.6.

또한 지난 12월 24일 입법예고한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주식 양도소득세제의 과세대상인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였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의 대주주는 지분율 2% 이상 또는 지분의 시가가 50억 원 이상인 주주였으나 지분율 1% 이상 또는 지분의 시가가 25억 원 이상인 주주로 확대되고, 또한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의 대주주는 지분율 4% 이상 또는 지분의 시가가 40억 원 이상인 주주에서 지분율 2% 이상 또는 지분의 시가가 20억 원 이상인 주주로 확대 개정될 예정이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 2> 참조).

<표 2>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확대 방안

현 행	개 정 안
□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 유가증권시장 -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 ○ 코스닥시장 -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40억 원 이상 ○ 코넥스시장 -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	□ 대주주 범위 확대 ○ 유가증권시장 - 1% - 25억 원 ○ 코스닥시장 - 2% - 20억 원 ○ (좌 등)

출처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2015.12.24.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연혁을 살펴보면,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의 경우 1998년 5% 이상의 지분 보유자(1인 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서, 1999년 3% 이상의 지분 또는 시가 100억 원 이상의

지분 보유자로 변경되었고, 2013년에는 2% 이상 또는 시가 50억 원 이상의 지분 보유자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2005년부터 과세하기 시작하였다. 2013년에는 코넥스시장이 새로이 개설됨에 따라 처음에는 코넥스시장 상장기업에 대한 과세기준을 코스닥시장 상장기업과 동일하게 설정하였으나 4개월 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분기준은 유지하면서 금액기준은 하향 조정하였다

〈표 3〉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연혁

시행령 개정일	개정 내용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코넥스시장
1998.12.31. (1999.1.1. 시행)	5%	-
1999.12.31. (2000.1.1. 시행)	3% 또는 100억 원	-
2005.8.5. (2005.8.5. 시행)	3% 또는 100억 원	5% 또는 50억 원
2013.2.15. (2013.2.15. 시행)	2% 또는 50억 원	4% 또는 40억 원
2013.6.28. (2013.6.28. 시행)	2% 또는 50억 원	4% 또는 40억 원 (코스닥) 4% 또는 10억 원 (코넥스)

출처 : 기획재정부·한국기업지배구조원, “주주에 대한 과세체계 정비방안 연구”, 연구용역 보고서, 2015, p. 67.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상장기업의 대주주의 분포를 살펴보면,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개인 대주주는 4,806명, 평균 지분율은 3.1%이고 법인 대주주는 1795개 사, 평균 지분율은 12.6%를 보이고 있으며, 코스닥시장의 개인 대주주는 5,085명, 평균 지분율은 5.17%이고 법인 대주주는 1,249개 사, 평균 지분율은 13.9%를 보이고 있다²⁾.

개인 대주주 중에서 본 주식 양도소득세제 개정에 따른 과세대상의 변동을 살펴보면,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1,262명에서 1,669명으로 32.3% 증가하고, 코스닥시장의 경우 1,466명에서 1,967명으로 34.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³⁾.

소액주주들은 현재 주식 양도소득세제의 과세대상은 아니나, 과세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주식 양도소득세제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본 세제 개정으로 인한 주주들의 추가 세 부담을 살펴보면, 기존 세제에 따른 대기업 대주주는 세 부담의 변동이 없고, 기존 세제에 따른 중소기업 대주주는 기존에는 10% 세율을 적용받다가 이제는 20%의 세율을 적용받아 10%의 추가 세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 4〉 참조).

본 세제 개정으로 인하여 세 부담이 가장 많이 증가하는 주주는 기존의 세제 상에서는 대주주가 아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하여 대주주가 되는 주주들이다. 다시 말해서,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의 지분을

2) 2014년 사업보고서에 지분율이 공시된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5% 이상 주요주주를 분석함

3) 과세기준(지분율 또는 지분가치) 중 지분율만을 고려하여 산출함

1~2% 보유하거나 보유지분의 시가가 25~50억 원인 주주들과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의 지분을 2~4% 보유하거나 보유주식의 시가가 20~40억 원인 주주들은 중소기업의 경우 20%의 추가 세 부담이 있고, 대기업의 경우에는 1년 미만 보유주식에 대해서는 30%, 1년 이상 보유주식에 대해서는 20%의 추가 세 부담이 있을 것이다(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 4> 참조).

〈표 4〉 주식 양도소득세제 개정에 따른 상장기업 주주들의 추가 세 부담 추정

과세기준			주주 구분 (세법 상)		세율 인상 폭	
시장 구분	지분율	지분가치	기존	현행	중소기업	대기업
유가증권시장	2%	50억 원	대주주	대주주	+10%	-
코스닥시장	4%	40억 원				
유가증권시장	1%	25억 원	소액주주	대주주	+20%	+20% (+30%, 1년 미만 보유시)
코스닥시장	2%	20억 원				

향후 개정시 고려사항

향후 주식양도소득세를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심도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먼저 증권거래세와의 관계이다. 증권거래세의 폐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증권거래세제와 주식양도소득세제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증권거래세의 경우 이익이 아닌 손해를 보더라도 납부해야 하는 거래에 기반한 세금인 반면에 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즉 매매금액이 구입비용을 초과한 경우에만 납부하는 세금이다. 따라서 증권거래세 납부에 대하여 투자자들은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점진적으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주식 양도소득세만으로 세수를 확충하는 게 바람직하나, 세수를 관리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거래에 기반한 증권거래세가 이익에 기반한 주식 양도소득세보다 훨씬 관리가 수월하다. 또한 주식시장이 불황일 경우 주식 매매 차익의 발생빈도가 낮아 세수 관리 측면에서는 증권거래세가 주식 양도소득세보다 훨씬 용이하다. 결국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더라도 유지하는 게 효율적인 세수 관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증권거래세 징수보다는 양도소득세 징수가 보편화되고 있어 우리 정부 또한 증권거래세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에 대하여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 되었다. 특히 일본의 경우를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본은 28년에 걸쳐 증권거래세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를 도입하였으며, 1961년에 대량 주식거래에 대해 양도소득세제를 도입하여 1989년에는 모든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기 시작하였다⁴⁾. 주식 양도소득세의 도입 및 효과를 오랜 기간 동안 논의하여 사회적 컨센서스를 조성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으며, 어느 정도의 사회적 컨센서스가 만들어진 후 주식 양도소득세를 사회적으로 큰 잡음 없이 본격적으로 도입하였다.

4) 대한상공회의소, “주식양도차익 과세 도입 검토에 대한 경제계 의견”, 2011.12.

대만의 경우 또한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다. 대만 정부는 1989년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를 전면 도입하였으나 주가 급락, 경기 악화로 인하여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1990년 다시 증권거래세로 환원하였다⁵⁾. 급격한 세제 개편으로 인하여 시장 상황이 악화된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배당수익률이 낮은 경우, 주식 양도소득세의 전면 도입은 시장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⁶⁾.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주식 양도소득세를 분리 과세하고 있으나,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을 비롯한 선진국처럼 근로소득과 함께 종합 과세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종합 과세를 하게 되면, 근로소득과 주식 양도차익을 합산하여 근로소득세율에 따라 누진 과세를 하게 된다. 종합 과세는 고소득자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으로 소득이 올라감에 따라 세율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 분리과세의 경우보다 훨씬 더 많이 세 부담을 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고소득자들은 높은 세율에 따른 세 부담이 커지게 되어 조세제도에 대한 반발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결 론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의 일종인 주식 양도소득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취지에 주식거래를 통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조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주식거래가 보편화된 현재 매 거래시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보다는 주식 양도소득세의 적용이 일반적이다.

조세제도의 개편은 국민들의 가처분이익(disposable income)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 국민의 실생활에 매우 중요하고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주식 양도소득세제의 점진적인 도입을 통하여 국민들이 세 부담을 감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아울러 주식 양도소득세를 전면 도입한다면 증권거래세의 폐지를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두 세제를 모두 적용한다면 주식시장 투자자들의 세 부담은 더욱 가중되어 결국은 주식시장의 경기 악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많은 여건과 변수들을 고려하여 점진적인 개편이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다.

정부 입장에서는 보다 많은 세수를 거두어야 하지만, 납세자 입장에서는 보다 적은 세 부담을 원한다. 두 입장 사이에서 이해의 충돌이 발생하지만 이를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정부와 납세자 모두가 수긍하고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조세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5) 대한상공회의소, “주식양도차익 과세 도입 검토에 대한 경제계 의견”, 2011.12.

6) 김갑래·김준석·황세운, “주식과세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14-05, 자본시장연구원, 2014.